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9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○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03.12.31.)으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사회복지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5375, FAX:3396-8734, 메일:inavi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폐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